

## 주식 · 출자지분 추가신고 안내

당사는 2018년 11월 9일자 서울회생법원 제13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2018년 12월 4일 개최합니다. 이에 따라 주식 · 출자지분 추가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1. 신고대상자 : 2018년 12월 4일에 개최되는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

### ※ 유의사항

- 1) 주주가 신고기간 내 의결권 행사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가 실권되는 것은 아니며, 채무자 회사의 변경회생계획안 결의 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이오니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분들은 추가신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주주의 의결권은 2018년 11월 19일을 기준으로 하는 폐쇄주주명부상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.
- 3) 변경회생계획안 및 요지의 일부 내용은 관계인 집회 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2. 추가신고기간 : 2018년 11월 20일(화) ~ 2018년 11월 27일(화) (09:00 ~ 18:00)

\* 12시~13시는 점심시간이오니 그 외 시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신고 장소 안내

가. 방문 접수 시

- 1) 신고 장소 : 서울회생법원 제13부 (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1층 종합민원실)
- 2) 주 소 :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
- 3) 교 통 편 : 지하철 2,3호선 교대역(법원·검찰청) 11번 출구 하차
- 4)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.

나. 우편 접수 시

- 1) 수신처 :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제13부
- 2) 접수증 동봉 시는 반송용 봉투(예: 회송용 민원 우편)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 (우표 첨부)  
\* 반송용 봉투 및 우표 미첨부 시에는 접수증이 반송되지 않습니다. (성명 및 주소 기재)

### 4. 신고서류

가. 종류

- 1) 주식 · 출자지분 신고서 2부(법원용, 채무자용 각 1부)
- 2) 증빙서류 및 위임장 (대리인 신고서 작성) 2부(법원용, 채무자용 각 1부)
- 3) 주식 · 출자지분 신고 접수증 1부

나. 신고서류 배부처 : 당사 홈페이지(<http://www.gammanu.com>)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신고서 작성요령

- \* 모든 신고서류와 증거서류는 각 2부씩(법원용 1부, 채무자 회사용 1부)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\*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☎ 031-831-8800~9, 내선번호(205))
- ※ 주식 추가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전담반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라며, 업무가 과중한 법원담당자에게는 전화를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가. 주식 · 출자지분 신고서 :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2부 작성

- 1) 거래명판 및 인감을 날인하고, 대리인란에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주주·지분권자의 주소/성명/전화번호 /전자우편주소	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(우편번호 포함), 전화번호(팩시밀리 번호 포함) 및 전자우편주소 기재
내용	주식 ·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(주권이 있는 경우 주권번호 기재요) 또는 그 수액
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의 표시	주식 · 출자지분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식· 출자지분 신고 시 첨부한 증빙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기재

나. 증빙서류 및 위임장, 신고접수증의 종류 및 작성요령

종류	내용	부수	비고
주식·출자지분에 대한 증빙서류	*11/19 기준(주주명부 폐쇄 기준일) 주식·잔고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사본 ※ 주주명부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폐쇄주주명부상 주식수를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합니다.	각2부	기타 경우는 채무자회사에 문의
종류	내용	부수	비고

인감증명서	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,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(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첨부)	각2부	
소명자료 (등기,등록증)	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* 개인(일반)은 불필요	각2부	
제출자 자료 (신분증, 위임장)	주주·지분권자 본인이 직접신고 시 신 분증 사본, 대리인이 신고 시 위임장 (인감증명서 및 동일한 인감 날인) 제출	각2부	
신고접수증	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란에 대리인 성 명을 반드시 기재 * 우편 접수 시, 반송용 봉투(우표 포함) 동봉	1부	반송봉투에 주소 명시

※ 증빙서류는 '원본확인필'된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. (원본 제출 아님.)

#### 다. 신고서류의 제출 순서

<b>1) 법인의 경우</b> ① 신고접수증 ② 주식·출자지분 신고서 ③ 주식·출자지분 신고내역서(예시참조) ④ 주식·출자지분 증빙서류 ⑤ 법인인감증명서 (사용인감계)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위임장 (대리인 신고 시 필요)	<b>2) 개인(또는 개인사업자)의 경우</b> ① 신고접수증 ② 주식·출자지분 신고서 ③ 주식·출자지분 신고내역서(예시참조) ④ 주식·출자지분 증빙서류 ⑤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(개인사업자의 경우) ⑦ 위임장(대리인 신고 시) 또는 신분증 사본(본인 신고 시)
--	---

- [별첨] 1. 주식·출자지분 신고서 예시 1부  
 2. 주식·출자지분 신고서 양식 및 위임장 1부

주식회사 감마누  
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김상기

